한국균학회 시상 및 수상후보자 선정관리 운영규정

제 1 조 (설치근거) 본회 학술정보위원회 규정 제 3조 2항*에 따라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.

제 2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상의 종류 및 수상 내역) 학회상은 한국균학회지 우수논문상, 한국균학회지 피인용상, Mycobiology 우수논문상, Mycobiology 피인용상, 학술상, 여성과학자상, 젊은과학자상의 7종으로 나누어 시상한다. 학회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각상별로 매년 1명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한국균학회지 우수논문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1년 동안 "한국균학회지"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연구내용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.
- 2. 한국균학회지 피인용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3년 동안 "한국균학회지"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피인용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.
- 3. Mycobiology 우수논문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최근 1년 동안 "Mycobiology" 에 게재된 논문 중 탁월한 연구내용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.
- 4. Mycobiology 피인용상은 최근 3년 동안 "Mycobiology"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피인용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.
- 5. 학술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학회 발전에 공이 크고,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.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 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.
- 6. 여성과학자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여성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.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.
- 7. 젊은과학자상은 균학분야의 연구책임자로서 균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만 45세 이하의 회원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. 수상자는 차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.

제 4 조 (심사위원회 구성)

1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학술정보위원회 위원장, 학술간사, 차기회장, 운영위원장, 영문편집위원장, 국문편집위원장 등 6인의 위원으로 구

성한다. 다만,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은 학술정 보위원장이 5인 이내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- 2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.
- 3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학술간사가 맡는다.

제 5 조 (수상 후보자 추천)

- 1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이 1명의 후보자를 소정양식(추천서, 공적조서, 이력서)에 의거하여 추천한다.
- 2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다.

제 6 조 (수상자 선정)

- 1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- 2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2012년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유효하다.
- 2.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선정 이외에 학회장 이름으로 외부기 관에 추천하는 포상후보자 선정도 본 운영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.
- 3. 본 개정규정은 [제3조 신설, 기존 6조 삭제, 기존조항(3조, 4조, 5조)의 변경 (각각, 4조, 5조, 6조로 변경)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